

연구수당 지급기준	심의구분 : 개정
	제안부서 :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

제안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수당 사용기준에 따라 변경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요점
<p>연구수당 지급내규</p> <p>제6조(계상기준) 연구수당은 인건비(현물, 미지급인건비 포함)의 20% 이내로 계상한다. 단, 지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간수탁사업은 예외로 한다.</p> <p>제7조(지급기준 및 절차) 연구책임자는 평가항목(연구기획, 연구수행, 연구실적, 연구참여도)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기여도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</p> <p>제8조(지급의 제한)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 포함) 1인 과제 또는 민간수탁사업은 예외로 한다.</p> <p>제9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연구수당 지급기준</p> <p>제6조(계상기준) 연구수당은 인건비(현물 및 미지급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,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)의 20% 이내로 계상한다. 단, 민간수탁사업은 예외로 한다.</p> <p>제7조(지급기준 및 절차) 연구책임자는 총연구개발기간(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) 동안의 참여연구자 전부(일부기간 참여자, 중도퇴직자 포함)를 대상으로 평가항목(연구기획, 연구수행, 연구실적, 연구참여도)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기여도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</p> <p>제8조(지급의 제한)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수당 사용액의 70%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연구책임자 1인 과제 또는 민간수탁사업은 예외로 한다.</p> <p>제9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.</p>	<p>인건비의 범위 추가 및 제3조(적용범위)와 중복내용 삭제</p> <p>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기간과 평가대상 추가</p> <p>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 반영하여 내용 수정</p> <p>관련규정 변경</p>

현행	개정(안)	개정요점
<p>부칙(2011. 10. 25) 본 제정 내규는 2020.10.25.부터 시행한다.</p> <p>부칙(2020. 2. 21) 본 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(2011. 10. 25) 본 제정 내규는 2020.10.25.부터 시행한다.</p> <p>부칙(2020. 2. 21) 본 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</p> <p>부칙(2022. 1. 1) 본 개정 내규는 2022.1.1.부터 시행한다.</p>	